

의안번호	제 495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4월 7일 (제289회)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발 의 자	강태원의원외 6명
발의연월일	2010년 4월 7일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49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0년 4월 7일
 발의자 : 강태원, 최미애, 최광옥
 권광택, 이영복, 김법기
 이규완

1. 제안이유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, 학예에 관한 의안도 소관 위원회의 발의가 가능하도록 동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교육, 학예에 관한 의안도 해당 위원회 발의가 가능하도록 명시(안 제57조)
- 입법예고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2조의2)
-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(안 제17조, 제20조, 제37조, 제47조, 제55조, 제59조)

3. 일부개정규칙안 : 별첨

4.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규칙 제 호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· 제20조제2항 · 제22조의2제1항 · 제37조 · 제47조제3항 · 제55조 · 제59조 중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나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각각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22조의2제1항 중 “의장은 의원이나”를 “의원이나”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되, 의장명의로 예고한다.

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7조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이나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	제17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<u>그렇지 않다.</u>
제20조(의안의 제출과 발의)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제20조(의안의 제출과 발의)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<u>그렇지 않다.</u>
제22조의2(입법예고) ① <u>의장은 의원이나 위원회에서</u>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<u>한다.</u>	제22조의2(입법예고) ① <u>의원이나 위원회에서</u> <u>그렇지 않다.</u> ④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의회 홈페이지나 충청북도 도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<u>하되, 의장명의로 예고한다.</u>
제37조(발언회수의 제한)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	제37조(발언회수의 제한)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<u>그렇지 않다.</u>
제47조(투표절차) ③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	제47조(투표절차) ③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 <u>그렇지 않다.</u>
제55조(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) 운영위원회는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	제55조(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) 운영위원회는 <u>그렇지 않다.</u>
제57조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교육·학예 사무에 대하여는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 다만, 교육·학예 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안이나 대안 등은 제출할 수 있다.	제57조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 <u><단서 삭제></u>
제59조(위원의 발언) 따로,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<u>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제59조(위원의 발언) 따로,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<u>그렇지 않다.</u>
부칙(2009.6.26, 제21호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(2010.0.0, 제00호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57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4조 (교육위원회의 설치) 시·도의회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(이하 "교육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5조(교육위원회의 구성 등) 교육위원회는 시 · 도의회의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7장에 따라 별도로 선출된 의원(이하 "교육의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되,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(교육의원이 궐원되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). 이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.[전문개정 2010.2.26]

제6조 (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) ①교육의원은 시·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.

②교육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자치법」의 시·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 <제8069호, 2006.12.20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, 제22조, 제2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 (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) 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하되, 2010년 8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에 따라 시·도의회 내에 설치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·의결하는 상임위원회로 본다.

②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「공직선거법」 제203조제1항에 따라 2010년에 동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(이하

"2010년 지방선거"라 한다)와 동시선거로 선출하며,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.